

## 교육연수원 규정

제정 2001. 09. 01    개정 2006. 12. 01  
개정 2007. 03. 01    개정 2013. 05. 01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(대통령 제12891호) 및 동 규정시행 규칙에 의한 경동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(이하 “연수원”이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수목표) 본 연수원은 현직 중등교사의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자질 향상과 새로운 전문지식 및 교육기술을 연마시키고 교육이론 및 방법, 일반교양 등의 교육을 통하여 교육전문가로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자기 역할의 수행과 우리나라 중등교육발전에 기여함을 연수목표로 한다.

제3조(소재 및 명칭) 이 연수원은 경동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이라 칭하며 경동대학 교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 이 연수원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중등교원 등의 연수
2. 연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, 운영 및 강좌개설
3. 연수 교육교재의 개발
4. 기타 연수에 관한 사항

### 제2장 조 직

제5조 (원장) ① 이 연수원에는 원장을 두며,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이 대학교 교원의 보직 임용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②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6조 (주임교수 및 교직원) ① 주임교수는 연수원의 일체의 교육에 관한 실무 운영 총괄 및 원생 관리와 지도를 담당하며, 전임교원 중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연수원의 행정 업무를 수행할 적정 인원의 교직원과 조교를 둔다.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이 연수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수중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(원장, 주임교수포함)으로 구성 하되, 총장이 임명한다.

제8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심의내용) 심의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.

1. 수업 및 연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2. 연수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
3. 평가 및 성적에 관한 사항
4. 연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5.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
6. 기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0조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 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4장 연수과정

제11조(연수대상) 이 연수원의 연수대상은 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자 중에서 선정된 교원으로 한다.<개정 2008.11.11> 다만, 연수원장은 당해 연수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정된 연수대상자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2조(연수과정) ① 연수과정은 상급자격 또는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연수과정과 교육의 이론, 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 과정을 둔다.

② 자격연수과정은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7조 [별표2]의 각 과정별 연수과정에 의하며, 직무연수과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③ 기타 연수과정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3조(연수기간 및 연수시간) ① 연수기간 및 시간은 과정별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며,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연수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되,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, 입학 및 수료시간은 이수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.

② 연수시기는 동계 및 하계방학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.

## 제5장 연수생 입학 및 수료

제14조(편제 정원) 과목별 정원은 40명으로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원장이 증감할 수 있다.

제15조(선발방법) 본 연수원 입학생의 선발은 학력 및 경력 등을 참작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정과 관련법규를 따른다.

제16조(서류제출 및 등록) 본 연수원에 입학이 허용된 자는 원장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,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.

제17조(수료) ① 수료자격은 각 과목별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총 이수시간의 90%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.

② 본 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<별지서식>에 의한 교원연수 이수증을 발급하고, 연수결과는 각 시·도 교육감에게 통보한다.

## 제6장 교과운영 및 평가

제18조(교육과정 편성) 각 분야별 교과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하되, 필요한

경우에는 시·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편성한다.

제19조(수업방법) 수업은 실습실기, 토의, 사례연구발표, 현장견학, 참여식 강의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.

제20조(연수평가) ① 연수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평가의 종류는 학습평가(객관식, 주관식), 연구실적평가, 근태평가, 실기평가로 구분 실시한다.

③ 세부적인 평가의 내용과 방법은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21조(성적) ① 본 연수원의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한 점수를 표시한다.

② 평가성적은 <별표>에 의한 정규분포 기준의 인원배정과 연수성적점수(정수)를 적용한다.

③ 연수평가에 있어 동점자 발생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.

1. 학습평가의 점수가 상위인 자
2. 주관식평가의 점수가 상위인 자
3. 연구실적평가의 성적이 상위인 자
4. 실기평가의 점수가 상위인 자
5. 근태평가의 점수가 상위인 자
6. 연령이 많은 자

제22조(표창) 원장은 연수 교육기간 중 교육공로가 있는 연수생에 대하여 연수평가 관리 규정에 의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표창할 수 있다.

제23조(징계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를 발생하게 한 연수생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퇴교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는 소속장에게 징계 사실을 통보한다.

1. 연수 생활이 불량한자.
2.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석한자.
3. 연수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
4.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.

## 제7장 수업료 및 재정

제24조(재정) 본 연수원의 재정은 연수생의 수업료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교비를 지원 받아 운영한다.

제25조(회계) 이 연수원의 회계는 독립하여 운영하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본교 재무 회계 규정에 따른다. 다만 여건에 따라 총장은 사무국에서 관장토록 할 수 있다.

제26조(보칙 및 준용) 기타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하며, 정하는 규정 이외의 일반 사항에 대하여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의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- ③ (기존규정 폐지) 경동대학교 부설 중등교육연수원 규정  
(경동대학교 부설 중등교육연수원 규정 제7-9호, 2001. 09. 01)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.  
② (관련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 대학교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관련규정에서 “중등교육연수원”은 “교육연수원”으로 한다.

&lt;별표1&gt; 연수성적 분포 조건표

계급	100	99	98	97	96	95	94	93	92	91	90	89	88	87	86	85	84	83	82	81	80
백분율 (%)	2.0	2.6	3.2	3.8	4.5	5.1	5.7	6.2	6.6	6.8	7.0	6.8	6.6	6.2	5.7	5.1	4.5	3.8	3.2	2.6	2.0

## 교육연수이수증

이수번호 : 경동대연수원-중-직무-(해당년도)-00

성명 : 주민등록번호 :

연수종별 : 이수시간 :

연수과정 :

연수기간 : 년 월 일 ~ 년 월 일( 일간)

위와 같이 이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경동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장